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박 성 근]

목 차

1	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
2	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2. 11. 29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- 다. 상정일자 : 제267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(12.12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 의원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·통보된 의정비와
- 「지방자치법」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 변경
 - 2023년 : 2022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(동결)
 - 2024년 ~ 2026년 :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(동결)
- 여비지급 기준 근거 변경 : 별표 5 → 별표 6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2. 11. 00. ~ 12. 00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근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·통보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
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/발의자 : 2022. 11. 29. / 김홍섭의원 대표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22. 11. 29.
- 다. 상정일자 : 제267회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(12.12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홍섭 의원)

-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(정책지원관)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, 직무범위 및 지휘·감독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조항 정비(안 제1조)
 - 정책지원관 위임 범 조문 신설
 - 목적조항에 올 수 없는 약칭표현 삭제
-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2)
 - 정책지원관의 배치, 직무범위, 지휘·감독사항 규정
- 법령 재기재, 약칭표현 등 정비(안 제2조·제5조·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2. 11. 00. ~ 12. 00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성근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